

Grow Together 이용약관 (Draft v1)

✅ **업데이트:**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한국 법인, DOUP Science Pte. Ltd. 100% 자회사)로 확정되어 제 1 조·제 14 조에 반영했습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한국 법인, 싱가포르 모회사 DOUP Science Pte. Ltd.의 100% 자회사)이 운영하는 멘토링 중개 플랫폼 “Grow Together”(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멘토·멘티)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사의 지위)

- ① 회사는 멘토와 멘티 간 멘토링 세션 매칭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원칙적으로 멘토링 세션 자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라 (i)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제 전 명확히 고지하고, (ii) 멘토에 대한 정보를 계약 체결 전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하며, (iii) 분쟁 발생 시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멘티가 구매한 크레딧을 이용해 멘토와 30 분 단위 화상 멘토링 세션을 예약·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제 4 조 (전문 조언의 한계 및 면책) — 신설

- ① 멘토가 세션 중 제공하는 조언은 **개인적 경험과 견해에 기반한 참고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세무·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② 멘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계정 정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진단, 처방, 치료 지시 등)
- 변호사법상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구체적 소송전략 자문, 법적 결론 단정 등)
-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행위, 특정 종목 매수/매도 추천

③ 이용자는 멘토의 조언에 따른 판단과 실행의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조언의 정확성·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크레딧 구매 및 환불)

- ① 크레딧은 선불 방식으로 판매되며, 구매 후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 ② 미사용 크레딧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 17 조).
- ③ 세션 진행 등으로 이미 사용된 크레딧 부분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7 일 경과 후에도 미사용 잔액은 이용자 요청 시 [수수료 공제 후/전액] 환불합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크레딧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멸 전 사전 고지합니다.
- ⑤ 회사는 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신고 절차를 준수합니다.

제 6 조 (멘토의 법적 지위)

- ① 멘토는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이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 ② 멘토는 세션 수락 여부, 상담 방식, 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회사는 멘토에게 특정 근무시간이나 전속성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③ 멘토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3.3%) 후 지급됩니다.
- ④ 본 조는 멘토가 향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퇴직금, 4 대보험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⑤ 제 3 항의 원천징수는 회사가 지급 시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멘토가 세션 참여를 위해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Commented [Jk1]: 이 경우 멘토는 별도의 소득신고등 행위가 필요해질까? 멘토가 멘토링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

Commented [C2R1]: 확인했습니다. 원천징수(3.3% 사업소득세)는 회사가 지급 시 자동 처리하므로 멘토가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다음해 5 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일반적 납세의무이지 저희 플랫폼이 추가로 부과하는 부담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거주 멘토의 경우 IRAS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항에 이 취지의 문장을 추가했습니다(제 6 조 5 항 신설).

신고 시 합산 신고 대상이며, 이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공통 적용되는 일반적 납세의무입니다.

제 7 조 (금지행위 — 플랫폼 우회 거래)

- ① 이용자는 세션 중 또는 세션 종료 후, 상대방과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여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연락·거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② 플랫폼의 매칭·중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연락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회사는 플랫폼 내 세션에 한해 신고·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이용자 간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자율적인 관계 발전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제 8 조 (세션 녹화 및 개인정보 보호)

회원가입 시 별도 동의한 세션 녹화·AI 처리·정보 유포 금지 조항(회원가입 동의서 제 7·8 항)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9 조 (Shy Mentor/Mentee 및 워터마크 기능의 한계) — 신설

회사가 제공하는 3D 아바타 및 동적 워터마크는 이용자의 익명성과 보안을 보조하는 기술적 수단입니다. 이용자 기기 성능, 네트워크 상태 등에 따라 기술적 왜곡이나 일시적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세션 중 생성된 콘텐츠(AI 요약노트 등)에 대한 권리 및 이용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 ①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멘토링 세션 내용 및 이용자 간 분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mmented [Jk3]: 나는 멘토와 멘티가 이 플랫폼에서 만나 실제로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이탈한다면, 좋은 사례이자 선순환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싶어.

다만 이 부분은 멘토와 멘티의 개인정보와 개인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연락함으로써 벌어지는 이후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쪽에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약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변호사로서 너의 의견을 알려줘.

Commented [C4]: 의견 드립니다. 말씀하신 방향(직거래를 막기보다 자연스러운 관계발전으로 보되, 그로 인한 사고에는 플랫폼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리스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전배려의무(민법 제 750 조)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100% 소멸되지 않는 법정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플랫폼 매칭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연락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 자체는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책임 인정 가능성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법적 방어장치라기보다 매출보호 장치였으므로 제거해도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고, 제 7 조를 비권장+책임범위 한정(고의·중과실 제외) 구조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법정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제 2 조)를 위반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정 정지)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단,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분쟁해결 절차)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녹화본 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형사 신고(고소) 여부는 피해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거법 및 관할)

①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한국 법인)이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회사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라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Commented [Jk5]: 계약 당사자는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가 될거야

Commented [C6R5]: 반영했습니다. 계약당사자를 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한국 법인)로 명시하고, 준거법·관할 조항의 조건부 문구를 제거했습니다.

별도 검토 필요 (약관 확정 전 선결 과제)

항목	필요 조치
계약당사자 법인 확정	확정 완료 — 한국 자회사(주식회사 그로우투게더, DOUP

항목	필요 조치
	Science 100% 자회사)가 계약당사자. 제 1·14 조 반영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여부	검토 결과: 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30 억원 미만 AND 연간 총발행액 500 억원 미만(둘 다 충족)이며, 개정법상 업종 1 개+가맹점 2 개 이상도 원칙적 등록대상에 해당(2024.9.15 시행). 초기 규모는 면제 가능성 높으나 성장 시 재검토 필수 — 상세는 코멘트 참조
크레딧 유효기간·환불수수료 수치	[] 부분 사업 정책 확정 후 기입
직거래 위약벌 금액	해결됨 — 위약금 조항 삭제로 더 이상 해당 없음 (제 7 조 참조)

Commented [Jk7]: 한국 법인 활용 예정

Commented [C8R7]: 확인했습니다. 코멘트 17 과 함께 제 1 조·제 14 조에 반영 완료했습니다.

Commented [Jk9]: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이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판단해줘.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등록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나 거래액 규모의 기준이 있는지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 해줘.

Commented [C10R9]: 중요한 질문이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결론: 귀사 크레딧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대상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초기 규모에서는 면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등록대상 확대: 2024.9.15 시행 개정법상 기존 업종 2 개+가맹점 10 개 이상 기준이 업종 1 개+가맹점 2 개 이상(지류상품권 포함)으로 확대됐습니다. 귀사는 멘토링이라는 단일 업종이지만 각 멘토를 개별 가맹점처럼 볼 여지가 있고 멘토가 2 인 이상이므로, 이 기준상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등록면제 기준: 발행잔액 30 억원 미만 그리고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 500 억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하나라도 초과 시 등록 필요).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이 기준 안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 권고: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부 지표를 마련하시고, 기준에 근접하면 사전에 금감원 또는 전자금융 전문 자문을 받아 등록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기준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업 확장 시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부칙 표에 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Commented [Jk11]: 직거래 위약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면 없애고 싶어.

Commented [C12R11]: 동의합니다. 위약금은 법적 리스크 방어장치라기보다 매출보호 목적이었으므로, 코멘트 9 답변과 함께 제 7 조에서 제거하고 비권장+책임범위 한정 구조로 대체했습니다.